주주여러분께

#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1 년 05 월 18 일 및 2021 년 05 월 28 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5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할인율 1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제1호의 1차 발행가액과 제2호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 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16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1) 우리사주조합 : 신규 발행주식의 3.0%인 195,000 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가.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 년 06 월 07 일 예정) 18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2525140163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나.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다.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7 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 주 이하(액면가 500 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예정) : 2021 년 07 월 19 일

(2)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1 년 07 월 19 일 ~ 2021 년 07 월 20 일(2 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1 년 07 월 22 일 ~ 2021 년 07 월 23 일(2 일간)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9. 청약취급처 :

-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증권㈜의 본, 지점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비증권㈜ 본, 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본,지점
- 일반공모 : 케이비증권㈜ 본,지점

10. 주금 납입 예정일 : 2021년 07월 27일
11. 신주 배당 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인수비율 : 100.0%)
13. 주금 납입 장소 : 중소기업은행 성서공단 사랑지점
14.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7월 02일 ~ 2021년 07월 08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15. 상 장 예 정 일 : 2021년 08월 11일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andf.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